

제12장 지식재산권

제12.1조 지식재산의 범위

이 장의 목적상, “지식재산”이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부 제1절부터 제7절까지에 언급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디자인, 특허, 집적 회로의 배치설계(반도체 지형학) 및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제12.2조 일반 원칙

1. 당사국들은 이 장 그리고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여 당사국들이 가입한 지식재산 관련 국제 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충분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보호를 보장하며 지식재산권의 침해로부터 그러한 권리를 집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이 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에서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보호 및 집행은 이 장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당사자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관장하는 다자 협정에 규정된 예외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보호¹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¹ 이 항의 목적상, “보호”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구체적으로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이용가능성, 취득, 범위, 유지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2) 제12.3조제2항에 규정된 효과적인 기술 조치의 우회 금지, 그리고 (3) 제12.3조제3항에 규정된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권리 및 의무

4.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모든 법, 규정 및 절차가 명문화되고 공표되거나², 공표가 실행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및 권리자가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5. 제1.4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에 더하여, 당사국들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그들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6. 당사국들은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의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WT/MIN(01)/DEC/2)에서 수립된 원칙을 인정한다.

제12.3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 각 당사국은

가. 대중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대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자에게 그의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대중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음반에 고정된 실연과 음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음반에 고정된 실연과 음반을 각각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대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제공한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법, 규정 또는 절차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이 항의 공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

2.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 관하여 해당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허락하지 않거나 각 당사국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 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게 할 것을 알면서 또는 민사구제에 대해서는 이를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³를 권한 없이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인으로부터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4. 당사국이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를 위한 적절한 단체의 설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단체들이 사용료⁴의 징수 및 분배에 대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기록의 유지를 포함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대중적으로 투명하고 그 단체들의 구성원에게 책임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장려한다. 이에 더하여, 당사국들은 당사국들 간 콘텐츠의 보다 쉬운 이용허락을 상호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 당사국 국민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대상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상호 송금을 장려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 각국의 집중관리단체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12.4조

상표

1. 당사국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상표권자에게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한다.

³ 이 장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의 대중 전달이나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의 대중 전달 또는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다음 정보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저작물·저작자·저작물에 관한 권리자 또는 실연자·실연자의 실연·음반 제작자·음반, 실연이나 음반에 관한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어떠한 숫자 또는 코드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료”는 공평한 보상을 포함할 수 있다.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려”는 당사국이 집중관리단체 간 계약 약정을 중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각 당사국은 상표가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소리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냄새표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 기술된 권리는 기존의 선행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국들이 사용에 기반하여 권리를 이용 가능하게 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4.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제12.5조

유명 상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967) (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제6조의2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상표⁶로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하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제12.6조

악의적 상표

⁶ 표장이 유명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의 명성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분야의 일반인의 범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각 당사국은 상표 등록을 위한 출원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규정한다.

제12.7조

산업디자인

1. 각 당사국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서 새롭거나 독창적인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규정한다. 당사국은 디자인이 알려진 디자인이나 알려진 디자인의 특징의 조합과 현격하게 다르지 않은 경우 새롭거나 독창적이지 않은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당사국은 그러한 보호가 본질적으로 기술적 또는 기능적 고려에 의하여 요구되는 디자인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산업디자인의 보호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산업디자인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보호되는 디자인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12.8조

부정경쟁

1. 각 당사국은 파리협약에 따라 부정 경쟁 행위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를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용이 제품의 미등록 외관을 복제한 결과인 경우에만, 그 제품의 미등록 외관의 사용을 금지할 법적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사용은 최소한 상품의 양도, 대여, 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 수입 또는 수출을 포함한다.

제12.9조

국가명

각 당사국은 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방식으로 당사국의 국가명칭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제12.10조

지식재산권의 집행

1.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 행정 및 형사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저작자·출판자·실연자·제작자 또는 방송국으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이름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민사 및 형사 구제를 포함하여 자국 법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집행절차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그리고 상표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한도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3. 각 당사국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반복적인 침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한다.

제12.11조

협력 및 협의

1.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당사국들은 무역 왜곡을 회피하거나 시정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을 검토한다. 무역상황에 영향을 주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사국들은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문제에 대한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2. 당사국들은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 협정 및 세계무역기구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한 진전사항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당사국들 간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가 협의 회의를 개최한다.